

의안번호	2215681
의 퇴 인	송재봉의원
회 답 일	2026.3.11.
추계번호	25D728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6조의2 제3항 신설(국민연금 가입 지원 등) ¹⁾ 신설	통일부장관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 중 최초로 부담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음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6조의2제3항 신설(국민연금 가입 지원 등)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보호대상자²⁾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등(안 제26조의2제3항)

- 현행법은 보호대상자로 결정³⁾된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로 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⁴⁾,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1) 개정안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내용은, 현재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위하여 국민연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재정수반요인에서 제외함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여야 한다.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61조⁵⁾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⁶⁾를 두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의 최초 부담분을 지원할 경우, 연금보험료 지원비용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 시점에서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연금보험료 금액, 연금보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assembly.go.kr

5)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지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② (생략)

6) 현행법 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② (생략)

③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다.

